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(운영위원회 제안)

의안 번호	2022-42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. 3. .

발 의 자: 운영위원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(안 제1조, 제3조~제4조)
- 나. 청원의 요건 보완, 청원의 이의신청 기간,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,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신설(안 제2조제3항, 제4조, 제5조제3항, 제10조)
- 다. 본회의에서도 청원인 등이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,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의 여비 지급 범위를 명확히 규정(안 제6조)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~제14조)

4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85조~제88조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7조~제59조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청원서 제출 등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청원인”이라 한다)은 청원서와 청원을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(이하 “소개 의원”이라 한다)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,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
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「청원법」 제6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4조(이의신청) ① 청원인은 제3조에 따른 불수리 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

제5조(청원의 회부와 심사)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 한다.

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·성명·청원의 취지·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.

③ 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 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

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청원인 등 진술)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청원인,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중 의원의 일비·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·의결하게 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(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

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

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

제9조(심사보고)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.

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
2.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

제10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1조(청원인에 대한 통지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.

1.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
 2.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
심사보고 하였을 때
 3.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
 4.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
 5.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
- 제12조(청원의 철회)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
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
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
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.
- 제13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
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서울
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청 원 소 개 의 견 서

청원건명				
청 원 인	주 소			
	성 명	(인)	생년월일 (성별)	(남/여)
소개의원	(인)			
소개년월일				
소개의견			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청 원 요 지 서

의안 번호	-
----------	---

청 원 건 명			
청 원 인	주 소		
	성 명		
소 개 의 원		접 수 일 자	
청 원 의 취 지			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청 원 철 회 요 구 서

청원건명			
청 원 인	주 소		
	성 명	(인)	(남/여)
소개의원	(인)		
소개년월일		청원철회일자	
철회요구사유			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85조 ~ 제88조

제85조(청원서의 제출)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및 주소를 적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86조(청원의 불수리)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.

제87조(청원의 심사·처리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.

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,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88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7조 ~ 제59조

제57조(소개의견서의 첨부)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(紹介)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.

제58조(청원서의 보완 요구)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9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.